

기술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상품 지원공고(안)

I. 공모 개요

☐ (개 요) 연구개발특구(이하 “특구”) 제도권 내 유망 기술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혁신스타트업팀 전담 취급상품

☐ (대상기업) 창업 후 7년 이내의 특구 제도권 內 중소기업*

* 특구 제도권 기업 선정 이력있는 졸업 기업 포함

< 특구 제도권 기업 >

- ① (연구소기업)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특구 내 설립한 기업
- ② (첨단기술기업)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특구 내 기업
- ③ (특구펀드투자기업) 연구개발특구펀드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

☐ 지원 제외대상

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,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- ㉠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(보증금지·제한기업)[참고1]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[참고2] 해당 시
- ㉡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[참고3] 해당 시
- ㉢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·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(신용도유의 기업, 금융부조리 사실이 있는 기업 등)
- ㉣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확약서[별첨1]를 제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신청한 기업

- 지원 제외대상 여·부는 접수일 기준으로 하며,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보증기관(신보·보증재단) 이용 중인 기업은 공모 신청 시 ‘보증관련 대출 상환 확약서(별첨1)’를 제출하여야 하며, 추후 최종 선정 시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을 전액상환하여야 함

* 기보 보증 이용 중인 기업의 추가보증 검토는 기존 영업점 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

- ☐ **(지원 규모) 10개社 이내** (최종 지원기업 수는 단계별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보증지원 가능 금액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·보증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
 -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10% 기업(약 1개社)은 우수기업 (Kibo-Star밸리)으로 선정하여 특별우대

II. 지원 내용

☐ 공 통

구 분		세부 내용
금융 지원	대상자금	▶ 자금용도 : 운전자금 (최대 30억 한도)
	우대사항	▶ 보증비율 : 100% 적용 ▶ 보증료율 : 0.7% 고정보증료 ▶ 매출액 기반 자금산정 없이 최대 3억원까지 지원
비금융 연계 지원*		▶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▶ 기술 경영컨설팅 등 전담 코칭 제공 ▶ 선정기업, 성공사례 등을 홈페이지,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 홍보 적극 지원

* 신청기업에 한해 선별적 지원

☐ 우수기업

- (금융지원) 최대 한도* 30억원으로 상향 지원
* 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한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(인증서) Kibo-Star밸리 기업 선정서 교부

III. 선정 절차 및 신청 방법 등

- ☐ **(신청·접수기간)** 2026. 9. 21. (월) ~ 2026. 10. 16. (금) 15시 (기한 엄수)

□ 선정 절차

단 계	주요 내용	일 정	수행
온라인 신청·접수	▶ 연구개발특구재단 이메일 접수 (inno-tat@innopolis.or.kr)	'26.9.21.(월) ~ '26.10.16.(금) 15시	특구 재단
↓ 1차평가 (추천심사)	▶ 2차 평가 대상기업 추천	'26.10월	
↓ 2차평가 (요건검토·서면평가)	▶ 3차 평가 대상기업 선정 *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	'26.10월	기 보
↓ 3차평가 (전문평가)	▶ 최종평가 대상기업 선정 * 평가위원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	'26.11월	
↓ 최종평가 (기술평가·보증심사)	▶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	'26.11월	
↓ 보증지원	▶ 선정기업 발표 후 보증지원	'26.12월	

□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
항 목	세부 내용
신청 방법	○ 연구개발특구재단 이메일(inno-tat@innopolis.or.kr) 접수 * '26. 10. 16.(금) 15:00까지 접수 건에 한함
제출 서류	① 기술사업계획서[별첨2] * 날인 생략 가능 ② 주주명부 (제출시점 발급분)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법인기업: 법인, 대표자/개인기업: 대표자) ④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⑤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(4개년('22~'25), 발급가능한 범위만 제출)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'26년 신고분)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- 해당 시 rnd.or.kr에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포함하여 발급 ⑧ 특구제도권기업 인증서(연구소기업·첨단기술기업) 또는 특구펀드 투자계약서 - 접수마감일 이전 인증서 교부 또는 투자 유치된 기업에 한함 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(2026.08.31. 기준) -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"동일하게", 검색기준 2026.08.31.~2026.08.31.로 발급 ⑩ 서면평가 근거자료 [별첨3] 파일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서류와 함께 제출 ⑪ 창업기업 확인서 (cert.k-startup.go.kr에서 발급) -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(규정상 기일)이 소요됨 - 창업기업 확인서에 한하여 '26. 10. 23.(금)까지 제출 가능 ※ ②, ③, ④, ⑦, ⑧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(선택사항)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회 자료

- 기술평가·보증 진행 기업은 현장실사 등 보증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별도 제출 (추후 안내)
-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분에 한 해 인정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- 허위서류 제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
- 상기 제출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하며, 해당 없는 경우 생략 가능

□ 유의사항

- 본 상품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담보(보증서) 제공을 위한 상품입니다.
- 공모 신청 시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기술보증기금의 최종평가(기술평가·보증심사) 완료 이후 공모 진행을 포기하실 경우, 향후 공모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
- 신청 시 [참고4]의 안내문 참고하시어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문의처

- (접수문의)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042-865-8955, sjy9179@innopolis.or.kr)
- (상품문의) 기술보증기금 서울혁신스타트업팀(02-3215-5973, istartup@kibo.or.kr)

- 별첨 1. 보증관련대출 상환 확약서(양식)
 2. 기술사업계획서(양식)
 3. 서면평가 근거자료(양식)

- 참고 1.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
 2.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 3.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 4.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

< 보증금지기업 >

1.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
2. 제1호의 자가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3.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(사실혼 관계 포함)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또는 출자한 자
 - 나.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

< 보증제한기업 >

1. 휴업 중인 기업
2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3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4.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 - 가. 대표자
 - 나. 실제경영자
 - 다. 따로 정하는 "기준"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
6. 파산·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7.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*
 - *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,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
8. "금융부조리 관련 기업"*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.
 - * 보증브로커 개입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, 금품제공기업, 부정청탁기업 등
9. 기금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이하 "신보"라 한다) 또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(이하 "보증재단"이라 한다)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「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」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)
10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11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- 가.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'보증금지기업'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- 나.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- 다.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- 라.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
 - 마. 기금이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기금이 상환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
1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'보증금지기업'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나.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(공동경영자 포함)
 - 다.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
14. 제12호 기업(마목 제외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
참고2

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
구 분	세부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	
		10차	11차
도박 게임 관련	·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※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	3340	3340
	·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	46463, 47640	46463, 47640
	· 도박기계 임대업	69390	76390
	·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	75999	75995, 75999
	·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91113	91113
	· 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	91242, 91249
사치 향락 관련	· 주류 및 담배 중개업	46102	46102
	· 귀금속 중개업	46109	46107
	·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	46331, 47221	46331, 47231, 46333, 47232
	· 귀금속 도소매업	46492, 47830	46492, 47830
	· 주점업	5621	5621
	· 노래연습장 운영업	91223	91223
	· 무도장 운영업	91291	91291
	· 마사지업	96122	96122
부동산 관련	· 주거용 건물 임대업	68111	68111
	·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	68121	68121
	·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 자문업	68221, 68222	68221, 68222
기타	·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	59142	59142
	· 전화방	91229	91229
	· 복권 발행 및 판매업	91241	91241
	·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	96992	96992

참고3

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
구 분	세부항목
(1개라도 "부"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)	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,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※ 다만,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
	② 실제경영자가(공고일 기준 2년 이내) 금융질서문란,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
	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
	④ 실제경영자(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)가 최근 2년 이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

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

-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부당개입 주요유형	
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	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
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	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
③ 허위 대출 약속	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
④ 정부기관 등 사칭	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
⑤ 부정청탁	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
⑥ 계약불이행	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
-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정부,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<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>

- (인터넷)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<https://www.kibo.or.kr/main>)
(경로: 고객마당 > 반부패신고센터 >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)
- (전화) 051-606-7551, 051-606-7563, 051-606-7568